

제10장 어르신 입·퇴소 및 계약

제283조 (입소정원·대상 및 모집방법)

행복한실버홈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68명
2. 입소대상
 - (1) 장기요양 1,2등급의 받은 어르신, 그 외 등급자 중 시설급여가 명시된 분
 - (2) 등외등급이나 케어가 필요한 노인으로 입소비용 전액을 본인부담하며 입소하기를 원하는 노인(단, 시설 정원 내에서 가능)
3. 모집방법
 -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그 가족, 지역사회(읍, 면, 부녀회, 봉사단체 등)에 입소 어르신 모집을 홍보한다.
 - (2)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284조 (이용계약)

수급자와 행복한실버홈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 보관, 1부는 서비스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 1) 입소대상자 및 가족,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2)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여 일상생활지원과 건강관리,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잔존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3.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비용과 기타 비용부담액을 합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면제한다.
- (3)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감경대상자 어르신은 본인부담비용을 경감한다.

4.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5.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운영

노인요양시설 내 의료 및 간호처치 욕구가 있는 수급자에게 의료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요양과 건강관리를 통합 제공하는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관련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6.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별첨참고)

장기요양 등급별 1일 급여액과 월 급여액(31일기준)

1) 일반실

일반실					
등급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8%	감경대상자 12%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일반대상자			
1 등급	2,803,950	560,790	224,316	336,474	면제
2 등급	2,601,210	520,242	208,097	312,145	
3 등급	2,456,440	491,288	196,515	294,773	
4 등급	2,456,440	491,288	196,515	294,773	
5 등급	2,456,440	491,288	196,515	294,773	
등급 외	-	-	-	-	

2) 전문요양실

전문요양실					
등급	한도액(원)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8%	감경대상자 12%	기초수급자(의료급여)
		일반대상자			
1 등급	3,307,390	661,478	264,591	396,887	면제
2 등급	3,071,480	614,296	245,718	368,578	
3 등급	2,893,540	578,708	231,483	347,225	
4 등급	2,893,540	578,708	231,483	347,225	
5 등급	-	-	-	-	
등급 외	-	-	-	-	

7. 기타 비용 부담액 (비급여)

비급여 항목 및 비용		산출근거		비고
식재료비	식재료비	1일(3500*3회)=10,500원	30일 기준 315,000원	
	간식비	1일(1,000원*1회)= 30,000원	30일 기준 30,000원	
상급침실	1인실	300,000원 (월)		*매월 단위로 고정된 금액
	2인실	150,000원 (월)		
이미용비		비용없음(현재 자원봉사자가 활동중)		*단 외부 미용실 이용 시 본인부담
진료약제비	필요시	어르신의 병원진료로 인해 및 병원비 및 약제비가 발생할 경우		
촉탁의진료비	매월 2회	월 2회 계약의사 진료비용 약 5,000원 가량		* 본인부담금에 따라 비용 상이
병원이동서비스	필요시	1회 30,000원(*울주군 관내)		
중환자 관리비	필요시	1일 10,000원		*중환자 관리를 위해 산소, 욕창재료비등 필요할 경우 1일 단위로 부담
특별실 사용료	필요시	1일 10,000원		※ 임종을 앞두거나 특별한 관찰이 필요하여 특별실을 이용할 경우
기타(물품)	필요시	(입소어르신의 개인 필요물품 구매시)		

- 식재료비는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년 조정 될 수 있다.
- 등급내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수급권자 식재료비 무료
- 시설 임·직원 및 친인척이 입소 할 경우 비급여부담액 중 일부를 경감할 수도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

장기요양서비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사전에 고지절차를 통한다.

- ① 등급의 변경 시
- ② 시설급여수가의 기준 변경 시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재계약 시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또는 보증인으로서의 신원인수인(갑)과 서비스 제공자(을)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 1)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2)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비스 이용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5)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6)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 1)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2) 서비스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3) 서비스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4) 서비스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5)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0. 입소 어르신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의무
- (3) 시설내의 개인물품 청결의무
-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 (1) 입소 어르신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2) 입소 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5) 서비스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입소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2) 입소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계약의 해제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이용계약은 해제된다.

- (1) 입소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때
- (2) 입소 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서비스 이용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4)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 어르신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 어르신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하더라도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85조 (이용료)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1) 등급의 변경시

(2)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 시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계약시

2. 매해 변경된 이용료는 시설 내 게시판에 게시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입소이용자 퇴소 시 이용료 잔액은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86조 (특별한 보호)

1.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며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입소 어르신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신체적 구속사유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으며 구속사유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집중관찰 · 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입소 어르신을 위해 집중요양실 등 특별요양실을 마련하여 제공한다.

(4) 호스피스 요양보호가 필요한 경우 격리 등의 집중요양이 필요한 환경을 제공한다.

2.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1)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2) 특별보호비용

1일 산소사용료 : 1만원, 1일 특별실 사용료 : 1만원

제287조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간호 활동

- (1)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2) 입소 어르신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 어르신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축탁의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4)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의료협약기관과 축탁의

- (1)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약의료기관인 서울산보람병원과 협의하여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 (2) 축탁의는 월 2회 행복한실버홈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진료

- (1) 입소 어르신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2)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다.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1)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처치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행복한실버홈 직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전원조치

입소 어르신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288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시설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

입하여야 한다.

1. 배상책임보험

(1) 시설장은 시설내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시설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입소 어르신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 어르신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은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가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289조 (시설물)

본 행복한실버홈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어르신은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 어르신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행복한실버홈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90조 (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
5. 서약서 1부(붙임1호)

제291조 (서약서)

본원에 입소하시는 어르신은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2조 (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293조 (입소물품)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294조 (시설관리)

행복한실버홈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 어르신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295조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한실버홈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2. 입소 어르신 및 보호자는 입소 어르신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3.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소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제296조 (장례)

입소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